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582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안성시 D 임야 10281㎡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5.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C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2. 5. 16. 접수 제201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과 C 사이에 안성시 D 임야 10281㎡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5.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2. 5. 13. 접수 제198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1) C은 2022. 4. 19. 그 소유이던 평택시 E블록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G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9.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천안세무서는 2023. 9. 12. 이 사건 아파트 양도건에 대하여 C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146,721,43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C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2024. 2. 16. 기준으로 153,552,630원이다.

나. 처분행위

1) C의 배우자 H은 망 I(1968. 4. 1. 사망)의 장남이고, 피고 A은 망 I의 3남 J의 장남, 피고 B은 망 I의 2남 K의 장남이다. 즉 피고들은 H의 조카들이다.

2) C은 2022. 5. 6. 그 소유이던 안성시 D 임야 10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A과 증여계약(이하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5. 16.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C은 2022. 5. 7.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증여계약(이하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5. 1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재산상태

제1, 2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C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47,292,600원으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고액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가액은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액 146,721,430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구체적 성립일은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2. 6. 30.로서 제1, 2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나, 제1, 2 증여계약 당시 이미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각 1/2씩 근접한 시기에 모두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위 각 증여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2)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C의 시아버지인 망 I이 소유하고 있다가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으로, C은 2012. 7.경 가족회의에서 선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조카들인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게 된 것이다. 즉 C은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선산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시키고자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제1, 2 증여계약이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모(母)토지는 C의 시아버지인 망 I(1968. 4. 1. 사망)의 소유였는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일부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2. 11. C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선산으로 보존되어 왔고, 망 I의 3남인 J이 2012. 7.경 위 토지가 C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C이 ‘산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대화 이후 J이 2013년경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C이 이에 응소하였고,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분쟁이 있는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C은 계속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이 2012. 7.경 이 사건 토지를 망 I의 자손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C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라는 점,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제1, 2 증여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